

#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22.

발의자 : 백혜련 · 추미애 · 신창현  
정성호 · 금태섭 · 이철희  
남인순 · 윤관석 · 김정우  
김종대 · 박정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.

「상법」에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·운영과 기관 구성 등에서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유한책임회사가 신설(2011. 4. 14.)되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.

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).

법률 제 호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제3호”를 “제1항제2호의2 또는 제3호”로 한다.

2의2. 유한책임회사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